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96호 2014. 3. 5 (수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4-1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59차) 2
- 하동군 고시 제2014-18호 2013년 하동군 수렵장 설정 해제(사용료 환급) 고시 4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4-167호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7
- 하동군 공고 제2014-168호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5
- 하동군 공고 제2014-169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및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2
- 하동군 공고 제2014-170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33
- 하동군 공고 제2014-172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1
- 하동군 공고 제2014-17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5
- 하동군 공고 제2014-175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93

회 람									
----------------	--	--	--	--	--	--	--	--	--

하동군 고시 제2014 - 1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59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2. 2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180-23 외 2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2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3) 제 396 호

도로명주소고시조서

출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접수구분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보대리 497-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189-25	20070618	도로시절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서쪽에 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촌길 12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촌길 120	20070618	부촌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촌길 420-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촌길 420	20070618	부촌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법리 435-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기탄길 18-12	20070618	신설해 실명서 아름다운 여울에 낙시대를 담겼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영림리 1191-1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381-12	20070618	도지장 기념물 제21호인 지리산 생계사 가는길로 탐방객의 한자도를 고려하고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문내리 869-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현왕길 19-1	20070618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동촌리 522-2, 521-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회남재로 414-31	20070618	악양면 동촌리에서 정암면 독계리로 넘어가는 회남재라는 고개를여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산리 647-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동상길 95	20070618	송산이라는 법정리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인성리 42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인성길 90-98	20070618	산들이 있어 임적이 커져 버린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복천면 사골리 425-5	경상남도 하동군 복천면 사골길 32-15	20070618	모랫둑으로 이루어져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옥단로 1653 (두왕농산)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옥단로 1653 (두왕농산)	20070702	하동군 옥중면과 산청군 단성면의 첫글자를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두왕농산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옥단로 1653 (두왕농산)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옥단로 1653-1 (두왕농산)	20070702	하동군 옥중면과 산청군 단성면의 첫글자를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두왕농산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법천리 413-3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옥단로 1094-3	20070702	하동군 옥중면과 산청군 단성면의 첫글자를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51-55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1022-4 (하동어평정릉도장)	20070702	기존 하동군 구고속도로와 사천시 후포로를 합쳐 구고속도로 부여	하동어평정릉도장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논향리 156-3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연화마을길 67	20080402	구노향 북쪽 도로 뒷쪽에 있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청룡리 240-4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청안길 52	20080402	옛날부터 전해는 이를 청룡안길의 들임말로 청안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포면 감달리 607-8	경상남도 하동군 양포면 원암샘골길 57	20080402	원암이라는 자연마을명에 교유지명을 합성하여 원암샘골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령리 23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령해안길 240	20090302	해변을 끼고있는 마을의 의미를 유지코자 중령해안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천면 견대리 358	경상남도 하동군 청천면 송재길 174-459	20090302	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4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40	20090710	2번 국도의 일부로서,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4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40-1	20090710	2번 국도의 일부로서,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분할

(4) 제 396 호

하동군 고시 제2014 - 18호

2013년 하동군 수렵장 설정 해제(사용료 환급)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2013년 하동군 수렵장 설정 해제(사용료 환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8일

하 동 군 수

■ 수렵장 설정해제

- 운영기간(당초) : 2013. 11. 01 ~ 2014. 2. 28
- 중단일시 : 2014. 1. 21 ~ 2014. 2. 28(39일간)
- 해제일시 : 2014. 2. 28
- 사 유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

■ 수렵장 사용료 환급

- 환급대상 : 2013년 하동군 수렵장 참여자
- 환급기준 : 수렵장 운영중단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환급
- 수렵장 사용료 환급금

(단위 : 원)

구 분	엽 구 별	산 정 식	환 급 금	환급대상(인)
엽기내	적색	(400,000원/120일)×39일	130,000	218
	황색	(250,000원/120일)×39일	81,250	119
	청색	(150,000원/120일)×39일	48,750	437
단기권 30일	적색	(300,000원/30일)×잔여일	개별산정	2
	황색	-	-	대상없음
	청색	(100,000원/30일)×잔여일	개별산정	17

※ 원단위 절사

○ 확인표지(Tag)를 추가로 구입하신 경우

☞ 추가구입한 확인표지(Tag)중 잔량 확인표지(Tag) 반납시에만
상기 환급액과 별도로 반납분에 대한 환급

구 분	동물별	판매단가	환급금	환급대상매수
추가 Tag	멧돼지	100,000원	100,000	1
	고라니	20,000원	20,000	3
	조류 1, 2종	3,000원	3,000	100

■ 수렵장 사용료 환급절차

○ 제출서류

가. 수렵참여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나. 본인명의 통장사본이 없는 자의 제출서류

- 기타사용료 환급금 양도신청서 1부(붙임 1 참조)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양수인의 통장사본 1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가. 방문신청 : 하동군 녹색환경과 / 9시 ~ 18시 (토,일,공휴일 제외)

나. 우편신청 : 우 667-805/경남 하동읍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녹색환경과

다. 팩스신청: FAX 055-880-2569 / 9시 ~ 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환급방법 : 제출한 통장계좌번호로 계좌이체

○ 환급예정일 : 2014. 3. 6부터~ 환급종료시까지

■ 기타사항

○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발급시 배부받은 확인표지(Tag)중 미사용
확인표지는 수렵동물 포획개체수 확인 등 향후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자발적 반납 협조

◇ 문의전화 : 하동군청 녹색환경과(환경지도담당) 055-880-2572 ~ 5

◇ 주 소 : (우 667-805) 하동읍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녹색환경과
(환경지도담당)

붙 임 : 기타사용료 환급금 양도신청서 1부. 끝.

하 동 군 공 보

(6) 제 396 호

<붙임 1>

기타사용료 환급금 양도신청서

양도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도	기분	과세번호	세목	과납금액	과납연월일	양도하고자 하는 금액

본인의 과납금을 「지방세 기본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2. 양수인의 통장사본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하동군 공고 제2014-167호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폐자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2. 폐지이유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계약직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3. 12. 12. 시행) 되면서,
-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와 임용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포함 개정되고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대통령령)」이 폐지됨에 따라 위임사항인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

4. 의견 제출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23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055-880-2153, FAX 055-880-2159, e-mail:borisu656@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8) 제 396 호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38호, 2014.2.5,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지방공무원과) 02-2100-4223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요건

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5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과 규칙으로 정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5호의 임용시험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④ 시험실시기관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6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3개월의 범위

하 동 군 공 보

(10) 제 396 호

에서 임용하는 경우. 다만,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계속되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전체 근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⑤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⑥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⑦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 보충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0]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하되,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0]

제21조의6(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외훈련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국외훈련 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21조의7(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12.30>

[본조신설 2013.11.20]

[제목개정 2013.12.30]

제21조의8(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53호, 2013.11.20, 타법폐지]

안전행정부(지방공무원과) 02-2100-3788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24853호, 2013.11.20>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전문개정) 1998.12.05 규칙 제855호 <제명>

(일부개정) 2013.04.10 규칙 제1086호 하동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규1086>

제2조(채용계약서) ①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계약당사자 양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4.10.규1086>

②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규1086>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 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3조(채용승인의 신청 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 1. 채용계획서

2. 채용계약서(안)

3. 성과계획서

4. 예산서 기본

5. 그 밖에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개정 2013.4.10.규1086>

제4조(채용구비서류)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4.10.규1086>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실적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규1086>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 해지일부터 1월 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8조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는 채용 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봉급액의 조정, 그 밖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규1086>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① 제7조에 따른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4.10.규1086>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5·6급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실과소장, 인사담당과장, 사업평가담당 실과소장, 그 밖의 실과소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라"호 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

하 동 군 공 보

(14) 제 396 호

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3.4.10.규1086>

제9조(보수결정) 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4.10.규1086>

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4.10.규1086>

③ 재직 중인 계약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공무원의 봉급인상률을 감안하여 그 인상률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채용구분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취득 등으로 봉급인상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 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개정 2013.4.10.규1086>

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4.10.규1086>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목표평가서 등 근무실적평가 관련서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규10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4-168호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2. **폐지이유**

공무원 직종개편(2013.12.12 시행)에 따라 종전 안전행정부의 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규정·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동 조례 및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

4. **의견 제출**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23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055-880-2153, FAX 055-880-2159, e-mail:borisu656@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 동 군 공 보

(16) 제 396 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40호, 2013.12.30, 타법개정]

안전행정부(지방공무원과) 02-2100 - 3788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조건) ① 임용권자(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상당 직위별, 상당 계급별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임용절차)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일간신문·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 2.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⑤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서와 임용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절차에 따른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연령은 두지 아니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근무성적평정) ① 임용권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5조의2제2항(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그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기만료(「지방자치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사임 또는 퇴직하거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된다.

제13조(징계 등)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법 제69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제70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71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의3 및 제73조의2제3항의 "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부칙 <제25040호, 2013.12.30>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생략

하 동 군 공 보

(22) 제 396 호

하동군 공고 제2014-169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및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및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및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13. 12.12.)됨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

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숙박비 현행화 등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 반영

3. 주요골자

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인상) 반영(조례안 제5조)

○ 3급 이하의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1)의 숙박비 현실화(당초 30,000원)

▷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원 ▷ 그 밖의 지역은 40,000원

나.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신설(조례안 제5조의1 신설)

○ 부정 수령액을 환수외에 2배 가산 징수

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직종개편)에 따라 관련 문구 수정(조례안 제6조제8호)

○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 임용령」으로 변경

○ 「계약직공무원」 “을 “ 「임기제공무원」 “으로 변경

라. 「지방공무원법」 개정(직종개편)에 따라 관련 문구 수정(규칙안 제2조)

○ 「기능직 운전원」을 「운전직 공무원」으로 변경

4. 의견 제출

이 자치 범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23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055-880-2153, FAX 055-880-2159, e-mail:borisu656@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운송료 및 숙박비 지급)”을 “(운임 및 숙박비 지급)”으로 하고, 본문 중 “운송료”를 “운임”으로 한다.

제5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 제3호 및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4호 중 “「관용차량 관리 규정」”을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하고, “「하동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6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26) 제 396 호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운 임				숙박비 (1야당)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군수는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 40,000

※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호를 말함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운송료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u>운송료</u>와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p>	<p>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u>운임</u>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p>
<p>제5조의1(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신설)</p> <p>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 2. (생략)</p> <p>3. 제17조제1항 단서 중 "<u>행정안전부장관</u>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p>	<p>제5조의1(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p> <p>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p> <p>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p> <p>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p> <p>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제17조제1항 단서 중 "<u>안전행정부장관</u>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p>

하 동 군 공 보

(28) 제 396 호

현 행	개 정 안
<p>4. 제18조제1항 단서 중 "「<u>관용차량 관리 규정</u>」 제4조"는 "「<u>하동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u>」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p>	<p>4. 제18조제1항 단서 중 "「<u>공용차량 관리 규정</u>」 제4조"는 "「<u>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u>」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p>
<p>5. ~ 6.(생략)</p>	<p>5. ~ 6. (현행과 같음)</p>
<p>7. 제29조제1항 중 "<u>행정안전부장관</u> 및 <u>기획재정부장관</u>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제2항 중 "<u>행정안전부장관</u> 및 <u>기획재정부장관</u>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7. 제29조제1항 중 "<u>안전행정부장관</u> 및 <u>기획재정부장관</u>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제2항 중 "<u>안전행정부장관</u> 및 <u>기획재정부장관</u>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8. <u>별표 1 제2호의 해당 공무원란</u> 「<u>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u>」은 「<u>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u>」으로, 같은 표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u>공무원보수규정</u>」·「<u>계약직공무원규정</u>」은 각각 "「<u>지방공무원 보수규정</u>」·「<u>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u>」으로 하고, "<u>일반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u>"은 각각 "<u>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공무원</u>"으로 한다.</p>	<p>8. <u>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u> 중 "<u>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u>"은 "<u>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u>"으로, "<u>공무원보수규정</u>"은 "<u>지방공무원보수규정</u>"으로, "<u>공무원임용령</u>"은 "<u>지방공무원임용령</u>"으로, "<u>일반임기제공무원</u>"은 "<u>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u>", "<u>전문임기제공무원</u>"은 "<u>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u>"으로 한다.</p>

하 동 군 공 보

(29) 제 396 호

현 행					
[별표] 운임 및 숙박비 구분표 (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 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 정 안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운임				숙박비 (1야당)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 임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군수는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 의 지역 40,000

※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호를 말한다.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하 동 군 공 보

(30) 제 396 호

현 행	개 정 안
<p>2. 자동차(버스)운임은 <u>국토해양부장관</u>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u>국토해양부장관</u>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p> <p>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p> <p>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p>	<p>2. 자동차(버스)운임은 <u>국토교통부장관</u>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u>국토교통부장관</u>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4. <u>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u></p> <p>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p>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능직 운전원”을 “운전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 무원의 범위는 「공무원 여비 규 정」 별표 8의 공무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 120생활 민원 공무원, 보건소 방문보건 지역담당 공무원, 보건지소·진료소 근무자, 농어민상담 소 공무원, 기능직 운전원, 읍·면 직 원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 ----- ----- ----- -----, 운전직 공무원,----- -----

하동군 공고 제2014-170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 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1. 개정이유

-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13. 12. 12)
-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규칙(표준안) 개정

2.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법」 개정(직종개편)에 따라 관련문구 수정 등
 - 기능직공무원 용어 삭제
 - 명예·조기퇴직신청서 및 명예·조직퇴직원 등 별지서식 변경

4. 의견 제출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23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055-880-2153, FAX 055-880-2159, e-mail:borisu656@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을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수당지급 신청대상”을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상위계급 구분”을 “상위계급 구분”으로 한다.

별표1, 별지 제1호~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하 동 군 공 보

(36) 제 396 호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제8조에 따름
------	-----	---

① 소속	④ 직급·계급·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③ 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⑤ 성명 한글	⑥ 주민등록번호
한자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무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 ,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확정일: . . . ,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 , 선고형:)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임기제 년 월 [] 별정직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개월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 ,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확정일: . . . ,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 , 선고형:)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인) 감사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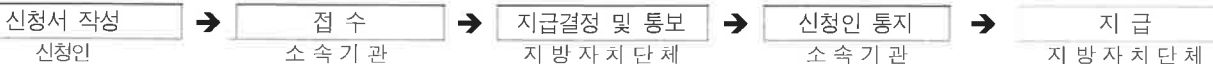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하동군수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리절차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 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하 동 군 공 보

(38) 제 396 호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 · 계급:
4. 성 명: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명예퇴직 신청일: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
자만 적용됩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름		
소속		공무원 구분	[]일반직(암7제 제외) []특정직() []별정직	직급·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호봉)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자택)		최초 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개월
수당 청구액			산출내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4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	--	--------

확인 인사담당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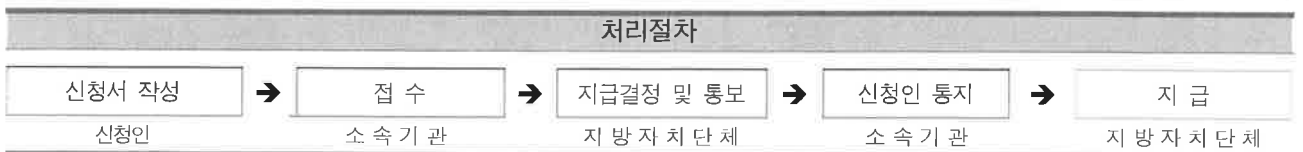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하동군수 귀하

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하 동 군 공 보

(40) 제 396 호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_____ _____ _____ _____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_____ _____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생략)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_____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생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상위계급 구분 _____ _____,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table border="1" data-bbox="193 1451 810 1771"> <thead> <tr> <th>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th> <th>명예퇴직 예정일</th> </tr> </thead> <tbody> <tr><td>1. 1. ~ 1. 15.</td><td>2. 28.</td></tr> <tr><td>3. 1. ~ 3. 15.</td><td>4. 30.</td></tr> <tr><td>5. 1. ~ 5. 15.</td><td>6. 30.</td></tr> <tr><td>7. 1. ~ 7. 15.</td><td>8. 31.</td></tr> <tr><td>9. 1. ~ 9. 15.</td><td>10. 31.</td></tr> <tr><td>11. 1. ~ 11. 15.</td><td>12. 31.</td></tr> </tbody> </table>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table border="1" data-bbox="831 1451 1449 1771"> <thead> <tr> <th>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th> <th>명예퇴직 예정일</th> </tr> </thead> <tbody> <tr><td>1. 1. ~ 1. 15.</td><td>2. 28.</td></tr> <tr><td>3. 1. ~ 3. 15.</td><td>4. 30.</td></tr> <tr><td>5. 1. ~ 5. 15.</td><td>6. 30.</td></tr> <tr><td>7. 1. ~ 7. 15.</td><td>8. 31.</td></tr> <tr><td>9. 1. ~ 9. 15.</td><td>10. 31.</td></tr> <tr><td>11. 1. ~ 11. 15.</td><td>12. 31.</td></tr> </tbody> </table> 비교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하 동 군 공 보

(42) 제 396 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기 재 란	(생략)	③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생략)	신청인 기 재 란	(생략)	③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input type="checkbox"/> 산 계	(생략)
	(생략)					(생략)			
소 속 기 관 기 재 란	(생략)				소 속 기 관 기 재 란	(생략)			
	(생략)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년 월 <input type="checkbox"/> 고용직	(생략)			(생략)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input type="checkbox"/> 인 기 체 산 계 년 월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비고(생략)					비고(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생략)	③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생략)	소 속	(생략)	③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input type="checkbox"/> 산 계	(생략)
성 명	(생략)				성 명	(생략)			
	(생략)					(생략)			
전화번호 (자택)	(생략)				전화번호 (자택)	(생략)			
수 당 청구액	(생략)				수 당 청구액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비고(생략)					비고(생략)				

붙임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개정 1998. 10. 18 운영 12100-507호
개정 2009. 2. 26 지방공무원과 566호
개정 2013. 12. 00 지방공무원과 0000-00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명예퇴직수당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하 동 군 공 보

(44) 제 396 호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조기퇴직수당

제9 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 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 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 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 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 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 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 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 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 동 군 공 보

(46) 제 396 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3.12.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하 동 군 공 보

(48) 제 396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 1998.12.09 규칙 제 856호

(일부개정) 2009.05.29 규칙 제1018호

(일부개정) 2013.04.10 규칙 제1086호 하동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규1018, 개정 2013.4.10.규1086>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4.10.규1086>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는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9.규1018>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29.규1018, 개정 2013.4.10.규1086>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3.4.10.규1086>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모두를 최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3.4.10.규1086>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개정 2013.4.10.규1086>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4.10.규1086>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규1086>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하 동 군 공 보

(49) 제 396 호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규101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규1018, 개정 2013.4.10.규1086>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5.29.규1018>

제3장 조기퇴직수당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4.10.규1086>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기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5.29.규1018>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 초과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규1018, 개정 2013.4.10.규1086>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29.규1018, 개정 2013.4.10.규1086>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정원 초과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한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규1018, 개정 2013.4.10.규1086>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한 직(계)급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규1018, 개정 2013.4.10.규1086>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5.29.규1018, 개정 2013.4.10.규1086>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5.29.규1018>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하 동 군 공 보

(50) 제 396 호

부 칙 <개정 2009.5.29.규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규10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4-172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차원에서 국가공무원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등 : 해임 → 해임-파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 필요
 - * 정부의 국정과제(83)인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 지방공무원 징계의 감경기준에 성폭력 및 성매매에 대하여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성희롱에 대하여는 미 규정
 -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에도 동일 기준 적용 필요

3. 주요골자

-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 성폭력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서 ‘파면-해임’으로 징계양정 기준 강화
-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성희롱 추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의 경우도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

4. 의견 제출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23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055-880-2153, FAX 055-880-2159, e-mail:borisu656@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매매”를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한다.

별표 1의 제7호나목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임

→

파면 - 해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성폭력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에 「국가공무원 법」 제78조의2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누 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1의2의 음 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 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1]<개정 2013.12.3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1의2와 같음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7호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하 동 군 공 보

(56) 제 396 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1 ~ 2. (생략)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 다. (생략)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붙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별표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1의3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 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 동 군 공 보

(58) 제 396 호

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별표1 적용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4조 (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의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7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

하 동 군 공 보

(60) 제 396 호

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4와 별표1의2를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2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뇌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제9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부 칙 <2013.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1의2과 같음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비고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62) 제 396 호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징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2]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계)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 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중요사항	1	2	3	4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하 동 군 공 보

(64) 제 396 호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계)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별표 4]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하동군 공고 제2014-17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을 통합·단순화(6종→4종)하는 「지방공무원법」 및 하위법령 제·개정(2013.12.12. 시행)에 따라 시달된 안전행정부 표준안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거 추가 개정
- '13.12.12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반영

3. 주요골자

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별표7의2) 개정
(안 제13조의3제1항)

- 신규임용시험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 등을 규정한 별표 7의2의 임용계급에 전문경력관 추가

나. 특수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범위 정정(안 제15조의2)

- 특수환경 공무원 경력임용 범위에 '13.12.12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반영

다.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별표7) 개정(안 제17조제2항)

-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규정한 별표7에 4개 직렬* 총 17개 자격증 추가

* 전산, 공업(일반기계·농업기계·일반전기·전자직류), 녹지(산림자원·조경), 방송통신

하 동 군 공 보

(66) 제 396 호

라. 직종개편에 따른 신설직렬과 관리운영직군 가점대상 자격증 추가
(안 제25조의2)

-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별표15)”에 신설직렬(위생)과 관리운영직군(토목운영 등 10개 직렬)의 가점대상 자격증 추가

4. 의견 제출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24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055-880-2153, FAX 055-880-2159, e-mail:borisu656@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호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7호의 장려수당”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로 한다.

별표 7,별표 7의2,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68) 제 396 호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 정	운 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 회 복 지	사 회 복 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열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하 동 군 공 보

(69) 제 396 호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야금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입연, 제신, 계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하 동 군 공 보

(70) 제 396 호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중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				
시 설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위생사
			영양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하 동 군 공 보

(71) 제 396 호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정,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정,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하 동 군 공 보

(72) 제 396 호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 시 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 리 운 전	조 리 운 전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삭제

[별표 7의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3조의3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자격증	등급	비율	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다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 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다군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신설 2006. 2.15>

하 동 군 공 보

(74) 제 396 호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 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 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 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 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 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 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 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 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 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 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 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 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 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 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 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 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 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 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 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 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 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 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 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 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운할관리, 생산기계, 전 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 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 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 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 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 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 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 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 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 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자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 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 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 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 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 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하 동 군 공 보

(75) 제 396 호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공 (전 업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금 업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섬 업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화 가 업 공 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학약품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학약품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지 업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농 업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축 업 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농 (산 업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수 의 의)	수의사		
해 (해 양 수 산 수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하 동 군 공 보

(76) 제 396 호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해양 수산 (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 품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 건 진 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교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 시 계 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하 동 군 공 보

(77) 제 396 호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토목, 수도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토목운영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하 동 군 공 보

(78) 제 396 호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화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화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일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일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학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학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하 동 군 공 보

(79) 제 396 호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박형태운영 선박기관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 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하 동 군 공 보

(80) 제 396 호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 업 연 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 업 연 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 업 연 구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농 업 연 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 업 연 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 지 연 구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
해 양 수 산 연 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하 동 군 공 보

(81) 제 396 호

직렬	계급	연 구 사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직렬	계급	지 도 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촌지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4.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15 조의2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p> <p>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7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p> <p>3. (생략)</p>	<p>제 15 조의2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 ----- ----- ----- ----- ----- ----- -----</p> <p>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p> <p>3. (생략)</p>

현행					개정안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관련)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정운수				산업기사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행정운수				산업기사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전산	전산	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하 동 군 공 보

(84) 제 396 호

현행					개정안				
직렬	계급 직류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5급이상	6·7급	8·9급
공 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공 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일반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일반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하 동 군 공 보

(85) 제 396 호

현행					개정안											
직렬	계급 직류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5급이상	6·7급	8·9급							
공 업	전 자	기술사 (산업계 측제어, 전자응 용, 컴 퓨터시 스템응 용, 품 질관리)	기능장(전자 기기) 기사(메카트 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품 질경영)	산업기사 (생산자동 화, 전자, 전자계산 기 제어, 품질경영)	공 업	전 자	기술사 (산업계 측제어, 전자응 용, 컴 퓨터시 스템응 용, 품 질관리)	기능장(전자 기기) 기사(메카트 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품 질경영, 반도 체설계)	산업기사 (생산자동 화, 전자, 전자계산 기 제어, 품질경영, 메카트로 닉스)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종자, 산림 농 화)			기사(종자, 산림, 임업 종묘, 식물 보호, 임산 가공)	산업기사 (종자, 산 림, 식물보 호, 임산가 공)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종자, 산림, 농 화학, 조 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 종묘, 식물 보호, 임산 가공, 조경)	산업기사 (종자, 산 림, 식물보 호, 임산가 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 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산림, 임업 종묘, 식물 보호, 농림 토양평가 관리)	산림보호	산림보호	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 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산림, 임업 종묘, 식물 보호, 농림 토양평가 관리)
							산림이용	기술사 (산림, 임산가 공)			기사(산림, 임 산가공)			산업기사(산 림, 임산가 공)	산림이용	기술사 (산림, 임산가 공)
방 송 통 신	통 신 사 통 신 기 술 전 송 기 술 전 자 통 신 기 술	기술사 (전자응 용, 정 보통신)	기능장(전자 기기, 통신 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 신)	산업기사 (전자, 전 자계산기제 어, 정보통 신, 전파전 자통신, 정 보처리, 사 무자동화)	방 송 통 신	통 신 사 통 신 기 술 전 송 기 술 전 자 통 신 기 술	기술사 (전자응 용, 정 보통신)	기능장(전자 기기, 통신 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 신, 전자계 산기, 무선 설비, 정보 처리)	산업기사 (전자, 전 자계산기제 어, 정보통 신, 전파전 자통신, 정 보처리, 사 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 경	기술사 (조경, 자연환 경관리, 산림)	기사(조경, 자연생태복 원, 산림)			산업기사 (조경, 자 연생태복 원, 산림)	조 경	조 경	기술사 (조경, 자연환 경관리, 산림, 신 설원에)	기사(조경, 자연생태복 원, 산림, 신 설원에, 식물 보호)	산업기사 (조경, 자 연생태복 원, 산림, 식물보호)				
			산림이용	기술사 (산림, 임산가 공)			기사(산림, 임 산가공)			산업기사(산 림, 임산가 공)	산림이용	기술사 (산림, 임산가 공)	기사(산림, 임 산가공)	산업기사(산 림, 임산가 공)		

하 동 군 공 보

(86) 제 396 호

현행					개정안						
[별표 7의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3조의3 관련)					[별표 7의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3조의3 관련)						
직무 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직무 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처 리분 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 사, 컴퓨터시 스템응용기술 사, 정보처리 기사, 전자계 산기조직응용 기사	1%	사 무 자 동 화 산 업기사 정 보 처 리 산 업 기 사 전 자 계 산 기 제 어 산 업 기 사	0.5	통신· 정보처 리분 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정보관리기술 사, 컴퓨터시 스템응용기술 사, 정보처리 기사, 전자계 산기조직응용 기사	1%	사 무 자 동 화 산 업기사 정 보 처 리 산 업 기 사 전 자 계 산 기 제 어 산 업 기 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 사, 컴퓨터시 스템응용기술 사, 정보처리 기사, 전자계 산기조직응용 기사, 사무자 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 기사, 전자계 산기산업기사	1%	정 보 기 기 운 용 기 능 사 정 보 처 리 기 능 사	0.5		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다군	정보관리기술 사, 컴퓨터시 스템응용기술 사, 정보처리 기사, 전자계 산기조직응용 기사, 사무자 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 기사, 전자계 산기산업기사	1%	정 보 기 기 운 용 기 능 사 정 보 처 리 기 능 사	0.5
사 무 관 리 분 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 력 1급	1%	워 드 프 로 세 서 컴 퓨 터 활 용 능 력 2 급	0.5	사 무 관 리 분 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다군	컴퓨터활용 능 력 1급	1%	워 드 프 로 세 서 컴 퓨 터 활 용 능 력 2 급	0.5
<p>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 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신설 2006. 2.15></p>					<p>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 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신설 2006. 2.15></p>						

하 동 군 공 보

(87) 제 391 호

현행				개정안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전산~방송통신(생략)				전산~방송통신(생략)			
추가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 시험, 철도보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 시험, 철도보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하 동 군 공 보

(88) 제 391 호

현행	개정안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 <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자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 <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하 동 군 공 보

(89) 제 391 호

현행	개정안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자동차 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용접, 프레스, 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정보통신, 열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공, 보일러,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정비, 집, 금형 제작, 기계 정비, 배관)	산업기사(운환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 컴퓨터, 로닉스, 생화학, 산자동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도차량, 철도동력차, 철도동력차, 전동기 정비, 객화차정비, 일차조작, 자동차 정비, 자동차 검사, 건설기계, 정공구설비, 치공구정밀량, 설계, 계량, 측정, 기계량, 전기, 계량, 용접, 프레스, 금형, 사출금, 제관, 배관, 정보통신, 산업안전, 산업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학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학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학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가, 산업안전, 품질관리, 식품)	

하 동 군 공 보

(90) 제 391 호

현행	개정안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 관리고분자 제품제조)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업, 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축산, 임산물보호,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축산, 임산물보호,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8.] [대통령령 제25073호, 2014.1.8.,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지방공무원과), 02-2100-3795

제7장 보칙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② 삭제 <1988.12.31>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은 동표에 의한 수당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1. 별표 9 제1호(사목은 제외한다)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2. 별표 9 제2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3.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나목·다목의 수당
4. 별표 9 제8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나목의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중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같은 호 다목·마목 및 바목의 수당

5. 별표 9의 각 수당(제1호가목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같은 호 나목의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의 수당 및 같은 호 사목의 수당과 제8호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표 제11호가목의 수당

6. 별표 9 제1호사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에 한정한다)

7.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9호의 수당

8. 별표 9 제11호다목의 수당과 같은 호 바목의 수당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11.1.10>

하 동 군 공 보

(92) 제 391 호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 급 대 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특수 행정 분야	8. 장 려 수 당	<p>가.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1) 일반직 6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p> <p>2) 일반직 7급: 월 38,000원 이하</p> <p>3) 일반직 8급: 월 36,000원 이하</p> <p>4) 일반직 9급: 월 34,000원 이하</p>
		<p>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1) 지급액 일반직 5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p> <p>2) 가산금 가)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관: 월 40,000원 이하 (2) 연구사: 월 30,000원 이하 (3) 그 밖의 일반직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나)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급: 월 40,000원 이하 (2) 2급: 월 30,000원 이하 (3) 3급: 월 20,000원 이하</p>
		<p>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p> <p>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p> <p>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p> <p>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p>

하동군 공고 제2014-175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고등학교, 전문대, 기능학과 설치대학) 재학생 중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장학금 지급('79년 도입)하고, 대상자가 임용된 후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가 입법취지와 달리 과도한 특혜(장학생 선발과 공무원 경제) 등이 문제시 되어 제도 미비점 보완 필요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표준안) 반영

3. 주요골자

가. 지자체별 장학생 의무선발 조항 삭제(안 제3조)

- 최근 9급 공채 경쟁률('12년 21.2:1)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1명 이상 경제토록 한 규정은 과도한 특혜소지

나. 장학생 선발 성적요건 변경(안 제5조, 별표)

- ▷ 고등학생 : 상위 5할 → 상위 3할 이내
- ▷ 대 학 생 : (재학생) 성적우수자 → 상위 3할 이내
(신입생) 상위 5할 이상 → 상위 3할 이내

하 동 군 공 보

(94) 제 391 호

다. 국·공립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우선선발 조항과 경합자의 경우 공무원·새마을지도자 가족의 자녀 우선선발 조항 삭제(안 제7조)

라. 장학생 선발시험을 시·도 위탁 근거 신설(안 제7조의1)

4. 의견 제출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24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055-880-2153, FAX 055-880-2159, e-mail:borisu656@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 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별표를 삭제한다.

제6조 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한다”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를 “선발한다”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96) 제 391 호

제7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생지원서

① 성 명 (한자 :)	② 생 년 월 일		⑤ 사 진 3.5×5(cm)
③ 현주소 (동 반)			
④ 재 적 학 교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⑥ 성 명	⑦ 생년월일	⑧ 직업	⑨ 주 소
⑩ 지원자와의 관계			

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 첨부 :
- 1. 학교장추천서 1통
 - 2. 성적증명서 1통
 - 3. 재정보증서 1통
 - 4.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장학생의 수) <u>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삭 제></p>									
<p>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p> <p>1. 2. (생 략)</p> <p>3. <u>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u></p>	<p>제5조(지원자격)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 (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u></p>									
<p>[별표] 장학생지원자격 학업성적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 학교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재학생</th> <th style="text-align: center;">신입생</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학 및 전문대학</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적우수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동일학과 신입생의 5할 이내인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등학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동일학년 재학생의 5할 이내인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동일학년 신입생의 5할 이내인자</td> </tr> </tbody> </table>	구분 학교별	재학생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성적우수자	동일학과 신입생의 5할 이내인자	고등학교	동일학년 재학생의 5할 이내인자	동일학년 신입생의 5할 이내인자	<p><삭 제></p>
구분 학교별	재학생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성적우수자	동일학과 신입생의 5할 이내인자								
고등학교	동일학년 재학생의 5할 이내인자	동일학년 신입생의 5할 이내인자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1. ~ 3. (생략)</p> <p>4. 재정보증인 <u>인감증명서</u> 각 1통</p> <p>5. (생략)</p> <p>6. 주민등록등본 1통</p>	<p>제6조(지원) ----- ----- ----- <u>군수에게 제출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u></p> <p>5.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 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u>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u></p>	<p>제7조(선발) ----- ----- ----- ----- <u>선발한다.</u></p>
<p><신설></p>	<p>제7조의1(<u>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u>) <u>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u></p>

하 동 군 공 보

(100) 제 391 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지원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지원서				
1.성명	(한자)	2.주민등록번호	사진 3.5×5cm		1.성명	(한자)	2.주민등록번호	사진 3.5×5cm	
3.현주소	(통 반)				3.현주소	(통 반)			
4. 재 적 학교	학과	학번 (전공과목:)			4. 재 적 학교	학과	학번 (전공과목:)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5.성명	6.주민등록번호	7.직업	8.주소	9.지원자와의 관계	5.성명	6.주민등록번호	7.직업	8.주소	9.지원자와의 관계
<p>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p> <p>첨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4.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각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성명 (인)</p> <p>하동군수 귀하</p>					<p>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p> <p>첨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4.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성명 (인)</p> <p>하동군수 귀하</p>				

관 련 법 령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신규임용)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

10.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제41조의4 (장학금 지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지급 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하 동 군 공 보

(102) 제 391 호

2.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대통령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지급대상·의무복무기간·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기타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6.27, 2001.1.29>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과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장학생의 수) 이 영에 의한 장학생의 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4조 (장학생의 지원) ①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지원서에는 2인의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품행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10일내에 그 결과를 해당 학교장 및 본인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의 수학기간동안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되,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고등학교 학생은 3년간

2. 전문대학 학생은 2년간

3. 대학생은 3년간(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은 4년간)

제7조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과 일정액의 수학보조금으로 하되,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8조 (지급시기등) ①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등록금 접수마감일 15일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연도의 최초장

학금의 신청은 장학생 선발일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학교장에게 장학금을 교부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장학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은 장학금중에서 등록금이 이를 대납하고, 그 잔여액은 즉시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음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때에는 학교장은 교부받은 장학금 전액을 그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정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장학생에게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중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사망한 때
2. 퇴학 또는 제적된 때
3.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5.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학과 또는 학교로 전과하거나 전학한 때
6.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학사유가 만료된 후 또는 동조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
7. 학업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제11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장래 공무원이 될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학사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학생에게 장차의 공무원임용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하 동 군 공 보

(104) 제 391 호

②학교장은 장학생의 성적 및 수학상태를 매학기 종료후 15일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용시험등) ①장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학과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에 이미 합격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충원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한 장학생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당해 도내의 다른 임용권자에게 임용추천을 할 수 있다.

제14조 (복무의무) ①장학금을 지급받아 학교를 졸업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이나, 병역복무·해외유학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관과 직위해제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제15조 (장학금의 반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 또는 장학생이었던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월 내에 본인 또는 그 재정보증인에게 장학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사망 또는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 때

2. 장학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내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반납을 명할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

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text{반납금액} = \text{지급한 장학금총액} \times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근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제16조 (체납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의무자가 반납 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내에 반납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보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장학제도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제18조 (위임규정) 장학생지원서의 서식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20741호, 2008. 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⑧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